

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규정

2021. 3. 22

기아 주식회사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6.03.18, 2021.03.22)

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기능 및 권한)

- ① 위원회는 내부거래 투명성 및 주주권익의 보호 등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 한다. (개정 2017.04.27)
 1. 「상법」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및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 (개정 2016.03.18)
 2. 주주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(개정 2016.03.18)
 - 가. 보증, M&A 등의 주요 경영사항
 - 나. 주요 자산(지분)의 취득·처분
 - 다. 자기거래 집행 내역
 - 라.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- ② 회사는 지속가능경영의 실천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. (개정 2017.04.27, 2021.03.22)
 1.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점검
 2.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과 관련된 주요 정책
 3. 윤리강령 등 윤리규범 제·개정 및 이행실태 평가
 4. 직전분기 건별 10억원 이상 기부금 집행 실적을 포함한 주요 사회공헌 분기별 집행 실적
 5. ESG 현황 점검(리스크 관리 포함), 추진 계획 (신설 2021.03.22)
 6.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및 실적 (신설 2021.03.22)
 7. 기타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(신설 2021.03.22)

제 2 장 구 성

제4조 (구 성)

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회 위원 (이하 "위원" 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 (개정 2021.03.22)

제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(자문역)

-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역을 둘 수 있다.
- ② 자문역은 2인 이상으로 하며, 이사회에서 위촉한다.
- ③ 자문역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회사의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재임 중 뿐만아니라 퇴임 후에도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7조 (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)

위원회는 결의를 통해 위원 중 1인을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.
(개정 2016.03.18)

제8조 (임 기)

- ①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일치한다.
- ② 자문역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장 회 의

제9조 (종 류)

-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.
- 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 필요할 경우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10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은 위원장에게 위원회 회의 소집사유를 밝히고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이때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의 위원회 소집요구에 응해야 한다.

제11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그 7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할 경우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12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,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 (개정 2012.03.23)
- ③ 자문역은 의결권이 없으며,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개진 및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.

제13조 (관계인의 출석 등)

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15조 (간 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6조 (규정의 개폐)

- ① 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- ②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 시 이사회 결의로 별도 세부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2021년 3월 22일

기아 주식회사